

## 부속서 2-마

### 화학물질

1. 세계무역기구협정,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그들의 의무를 상기하고, 각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자는 다음의 공유된 목적과 원칙을 확인한다.

- 가. 개방성, 비차별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수립하는 것
- 나. 지속적이고 상호 유익한 무역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
- 다. 공중보건 및 환경의 높은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
- 라.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장려하고 동물 실험을 축소하는 것
- 마. 적절한 규제 메커니즘을 이행하고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
- 바.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이행에 기여하는 것, 그리고
- 사.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우수 관행을 국제적으로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

2. 양 당사자는 제1항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- 가. 화학물질 분야에서 양 당사자의 법, 규정,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밖의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
- 나.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규제하고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제공하는 것
- 다. 법령의 채택 및 이행, 위험성 평가, 그리고 비밀 사업정보의 등록, 허가, 통보 및 처리에 관하여 우수 관행을 가능할 때에는 언제든지 적용하는 것, 그리고
- 라.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접근의 국제적 조화를 추구할 목

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더욱 조화된 접근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범 실험실 관행 및 실험지침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

3.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 효과를 갖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한다.

4.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제3항에 상정된 논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하여, 화학물질 작업반이 제15.3조(작업반)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. 화학물질 작업반은,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언급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, 최소 매 2년에 한 번 회합한다.